

제229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 
제4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

# 검 토 보 고 서

(보건소 소관)

2021. 6. 15.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(안)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본 승인안은 2021년 5월 28일 의안번호 제2082호로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예비비 지출내역

### 가.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잔액	지출사유
	단위	세부	통계목				
합 계				224,191,000	224,191,000	0	
건강 증진과	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운영	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 지원	기간제 근로자등 보수	59,191,000	59,191,000	0	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라 방역활동, 방역물품 구매
			의료 및 구료비	165,000,000	165,000,000	0	

### 나. 검토의견

- 2020회계연도 보건소의 예비비 집행은 건강증진과의 1건 2억 2,419만 1천원이며, 집행 잔액은 없음.

-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“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지출” 하는 것으로,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이며,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 관련 법령 1부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**제129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지방재정법

[시행 2021. 1. 1.] [법률 제16855호, 2019. 12. 31., 타법개정]

**제43조(예비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,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6. 9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 <신설 2014. 5. 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4. 5. 28.>